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호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1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발 의 자 : 이호대 의원(1명)
찬 성 자 : 경만선, 김경우, 김소영,
김정태, 김종무, 신정호,
이태성, 임종국, 장인홍,
황규복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감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점자 및 자막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·보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반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함(안 제8조의2제3항 신설).
- 나.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의 개발·보급을 규정함(안 제8조의2제4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-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·보급해야 한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data-bbox="212 376 780 488">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시) ①·② (생략)</p> <p data-bbox="247 510 418 555"><신설></p> <p data-bbox="247 846 418 891"><신설></p> <p data-bbox="247 1249 418 1294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10 376 1378 488">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847 510 1378 824"><u>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47 846 1378 1227"><u>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·보급해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47 1249 1378 1496"><u>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</u></p>